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9. 14 선고 2021가단213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김재인, 정우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바울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암

담당변호사 김정태

변 론 종 결 2021. 8. 17.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4. 접수 제91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03. 5.경 D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03. 10.경 중간 양수인 E(췌)을 거쳐 C에 대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채권을 최종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8.경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18. ‘C은 원고에게 19,637,00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3.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과 자녀들인 H, 피고, I, C이 있다.

라.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2018. 9.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8. 3.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천안시 서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부존재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C의 소멸시효의 항변 없이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C은 추완항소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상속 개시 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대상으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은 별다른 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상속인의 지위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바, ‘상속포기의 신고’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기는 하나, C이 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해의사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9. 14. 접수

제917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애정

별지

부 동 산 의 표 시

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 297.4㎡

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

단독주택(다가구주택)

1층 15.53㎡

2층 175.54㎡

3층 175.54㎡

4층 175.5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 관할, 소유)

